

인천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가단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성락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동규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0. 6. 2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30. 접수 제302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자신이 D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D은 2020. 6. 29.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4472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D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 등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17.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부동산이 다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취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D에게 복귀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실현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